

「출입국관리법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제안이유

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(F-2)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취업 활동 가능한 거주(F-2) 자격 외국인 범위 확대 (안 제23조제2항제1호)

제12조 관련 별표 1의2 24. 거주(F-2) 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 자격에 따른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

나. 거주(F-2) 체류자격의 세부 항목 신설 (안 제12조 관련 별표 1의2 제24호)

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거주(F-2) 체류자격의 세부 항목에 추가함

대통령령 제 호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제1호 중 “자목부터 카목까지”를 “자목부터 타목까지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제24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체류자격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2제24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) ① (생 략)	제23조(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별표 1의2 중 24. 거주(F-2)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<u>자목부터 카목까지</u>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	1. ----- ----- <u>자</u> <u>목부터 타목까지</u> ----- ----- -----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시행령 [별표 1의2] 신·구 대비표

현행	개정안
1. 외교 (A-1) ~ 23. 방문동거 (F-1) (생략) 24. 거주 (F-1) 가. ~ 카. (생략) <u><신설></u> 25. 동반 (F-3) ~ 30. 기타 (G-1) (생략)	1. 외교 (A-1) ~ 23. 방문동거 (F-1) (현행과 같음) 24. 거주 (F-1) 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 타.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25. 동반 (F-3) ~ 30. 기타 (G-1) (현행과 같음)